

1. 개정이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등 중대비위에 대한 공직 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2의2, 별표1)

- 1) ‘성 관련 비위’에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의 별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2의2)
-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나.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3)

- 1)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음주 운전자(은닉교사자) 및 음주운전자를 은닉·도피시킨 비운전자(은닉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 2)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방조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별첨(별지 2)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스토킹	과면	과면~해임	강등~감봉	감봉
--------	----	-------	-------	----

별표 1 비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8. 제7호아목의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1호바목을 제1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바.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2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란물 유포	과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감봉
-----------	-------	-------	-------	----

별표 2의2 비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5. 제1호바목에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4호에서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주운전 은닉 또는 방조		
가. 음주 운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강등~감봉
나. 타인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별표 3 비고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7. 음주 운전자(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타인에게 허위진술(음주측정 포함)을 요청하는 등 음주 운전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위 징계기준의 처리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8.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을 위하여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제9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 만원 미만	수동	경징계· 중징계	강등~감봉	중징계	해임~정직	중징계	파면~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이나 향응 등”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